

충주시의회
제123회 임시회
2008. 2. 1(금)

조례안건 심사보고서

충주시 향토음식 발굴·육성 및 관리 조례안	보 건 위생과
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	건 강 증진과

產業建設委員會

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안건명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충주시 향토음식 발굴· 육성 및 관리 조례안	2008. 1. 22	2008. 1. 22	2008. 1. 28	2008. 1. 28	김경숙 의원
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	2008. 1. 22	2008 1. 22	2008 1. 28	2008 1. 28	심재연 의원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·육성 및 관리 조례안

충주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·육성·발전시켜 고유한 향토음식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먹거리를 이용하여 관광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

나.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저조함에 따라 자녀의 임신·출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충주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·육성 및 관리 조례안

- 향토음식의 발굴·육성·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주시향토음식위원회를 둠(안 제3조)
- 시장은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경진대회,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발굴된 향토음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함(안 제9조)

나.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, 보호자로 하고 거주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 경과 후에 지급 (안 제3조①)
- 임신축하금 지급대상자는 6개월이상 주민등록 및 임신 5개월 이상 경과자 (안 제3조②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·육성 및 관리 조례안

- 우리시가 지금 향토음식 발굴·육성 관리조례안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은 때 늦은 감이 있음

우리시는 온천·산악·호반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찬란한 중원문화 유산을 배경으로 각종 문화·관광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고 중부내륙의 명실상부한 휴양관광도시로 부상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는바, 이를 뒷받침하는 먹거리 산업으로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특화하는데 그 당위성이 있다고 하겠음

- 시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으로는 사과국수, 올갱이국, 비빔회, 꿩샤브샤브, 산채정식, 오리백숙, 사과순대를 지정하여 집중 홍보를 하고 있고, 현재 지정된 향토 음식점은 10개소를 지정하고 있음
- 현재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시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에 소개하여 홍보를 해주고, 각종 음식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이외에는 별 다른 인센티브는 없지만 식품위생법의 근거에 의하여 지원을 해 주는 “모범음식점”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봄
- 모범음식점은 향토음식의 특성화된 맛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, 음식점의 전반적인 위생상태를 가지고 모범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지정 취지가 “향토음식점”과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시설개선자금지원, 세제, 쓰레기봉투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있음

- 현재의 조례안이 시행되게 된다면 충주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자금 융자, 보조금 지원 등 행·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고

앞으로 관광충주의 명성에 걸맞도록 충주향토음식의 명품화를 위해서 관련정책과 인센티브를 두어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홍보하여 훌륭한 먹거리 관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

나.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본 조례안은 저출산율을 회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국가와 지방의 의지를 나타낸 조례
이 조례는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의 임신·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
- 이와 같은 조례는 전국적으로 7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 단체별 특성을 가미하여 출산 등의 장려금을 지원하여 주고 있음

<자치단체별 출산장려금 지급사례>

(천원)

시군	첫째	둘째	셋째이상	기타
서울 종로	-	500	1,000	
강서	-	-	300(셋째까지)	넷째이상 1,000
인천 중구	-	-	1,000	
평택시	-	300	500	
안양시	-	-	1,000	
이천시	-	-	1,000	
원주시	100	300	500	
청주시	300	500	1,000	
나주시	-	-	2,000	
경주시	-	1,200	2,400	
문경시	500	700	1,000	
가평군	1,000	1,000	1,000	
양평군	-	500	1,000	
양양군	100	1,200	3,600	

-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 특성별로 첫째나 둘째까지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많으나 지방의 소도시 일수록 첫째부터 지원하는 경향이 많음

- 우리시의 경우는 첫째는 시비로 3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는 국·도비 50%를 지원받아 120만원(10만원×12개월)을 지급하며, 셋째이상은 180만원(15만원×12개월)을 지급하고 쌍생아 이상은 일반 출생아의 지급액에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음

<출산·임신관련 지급액/ 2008년도 예산 기준>

구분	지급금액(천원)		비고
출산장려금	첫째	300	
	둘째	1,200(10만원×12월)	국·도비 50%
	셋째	1,800(15만원×12월)	"
	쌍생	2,000	
	삼생	3,000	
임신축하금	100		

- 본 조례안에서는 도의 정책사업에 의한 국·도비 지원 출산장려금은 도의 사업지침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1인당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하였음
- 지원대상자의 자격은 「출산장려금」은 주민등록 12개 월 거주기한을 두어 최소한의 기간동안 시민의 자격을 소지한 부, 모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자 하고, 「임신축하금」은 6개월 이상의 주민등록 요건에 임신 5개월 이상자로 한정하였고
- 기타 장려금을 신청받아 처리하는 등의 자세한 절차관계는 규칙으로 위임하여 시장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음
- 이 조례에서는 출산자의 편의를 위해 거주조건을 신생 아의 "부 또는 모"로써 선택적 기준을 규정하였고

출산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기간도 충분하게 설정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하였으며,

무엇보다도 출산장려금, 임신축하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조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

5. 질의답변 요지

가.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·육성 및 관리 조례안

▶ 질의 : 제4조 위원회 구성에서 식품관련업계 대표는 누가 되는 것인지?

○답변 : 음식업지부 등 음식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말함. 요리학원 전문가 등

나.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▶ 질의 : 기존에 출산장려금 조례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어떤 근거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왔는지?

○답변 : 「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」의 근거에 의해 지원해 왔음

6. 심사결과

가.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·육성 및 관리 조례안

: 원안가결

나.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: 원안가결